

형사소송법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②

① 제8조 제1항

②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 제1항

④ 제6조

2. 정답: ②

① 대판94모25

② 제32조 제2항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③ 제31조

④ 제243조의2 제2항

3. 정답: ③

① 대판 98도3329

② 대판97도1240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07도3164) /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불과하여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적법한 수사이다.

④ 대판2008도7724

4. 정답 : ①

중합 48+ 1+ 10=49

㉠ 제200조의2 제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

㉡ 제198조의2 제1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제202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5. 정답 ①

①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도6035)→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체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 통지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② 대판2011도12927

③ 제214조

④ 대판2008도3640

6. 정답 ③

①②④ 대판2011모1839 전합

③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대판 2011모1839)

7. 정답. ④

㉠ ×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 : 제236조(대리고소)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88도1533)

㉢ × : 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 : 제226조

㉤ ×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판2010도9524)

8. [정답] ④

①② 대판2009도1322

③ 대판2010도3359

④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동의×→고지

9. 정답 ③

해설

①② 제279조의 2 제1항 제3항

③ 제279조의2 제2항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79조의 8

10. 정답①

① 제262조 제4항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② 제35조의 제3항

③ 제482조의 제1항

④ 제253조의 2

11. 정답 ②

① 제266조의7 제2항

② 제266조의8 제5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③ 제266조의 15

④ 제266조의 8 제4항

12. 정답 ④

㉠ ×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2016도8137)

㉡ ○ : 대판2011도3509

㉢ ○ : 대판2011도12918

㉣ ○ : 대판2014도1779

13. [정답] ③

㉠ ×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2015도16586)

㉡ ○ : 대판83도196

㉢ ×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판2003도6548)

㉣ × :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판2013도2511)

14. 정답 ④

① 대판2005도7601

② 제154조

③ 제151조 제7항

④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정답: ②

㉠ × :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와 증거인멸죄(이하 '증거인멸죄 등'이라고 한다)는 범행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살인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나 증거인멸죄와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대판2016도15526)

㉡ ○ 대판2009도14263

㉢ ○ 대판2009도13463

㉣ ○ 대판2012도6612

16. 정답 ①

엄격한 증명㉠㉡㉢

㉠ 엄격한 증명 (대판2013도6570)

㉡ 엄격한 증명 (대판99도1252)

㉢ 엄격한 증명(대판2001도4013)

㉣ 자유로운 증명(대판2011도4451)

㉤ 자유로운 증명(대판2015도1233)

㉥ 자유로운 증명(대판2003도8077)

17. 정답①

㉠ 대판2008도4582

㉡ 제346조의2

㉢ 제347조

㉣ 대판2003도451

18. 정답: ②

①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제32조 제3항 제1항의 결정(해임의 결정)에 대

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④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9. 정답. ④

㉠ ○ : 대판2012도2938

㉡ ×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2011도1932)

㉢ × :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도7931)

㉣ ○ : 대판2014도739

㉤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판2008도77)

20. 정답 ③

①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②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2003도2735)

④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